

2022년도 제6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2. 4. 27.(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강태욱, 김경숙, 노정동, 박성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2-60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545건(안전번호 제2022-26145호~27712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2-26145호~26148호(순번 1번~4번)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방조행위에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 정보'로 인정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이 인정되어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2-26149호(순번 5번)는 ○○○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일 현재 삭제되어 삭제·전송 중단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2-26150호~26151호(순번 6번~7번)는 이용자가 해당 계정을 탈퇴하여 불법복제물이 서버에서 영구 파기됨으로써 저작권 침해 상태가 해소된 점, 시정권고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2-26152호~26156호(순번 8번~12번)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등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하되, 제2022-26156호(순번 12번)은 현재 삭제되어 삭제·전송 중단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함.

안건번호 제2022-26157호~26164호(순번 13번~20번)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518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6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2-6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5쪽 내지 10쪽의 OSP명, 게시물명, 게시자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C,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

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OSP명, 게시물명, 게시자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13쪽~18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7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2,545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4번은 민원인이 실명으로 신고한 건임.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에서 '▲▲▲▲▲▲▲▲', '◇◇◇◇◇◇◇◇' 등 국내 방송물로 연결되는 다수의 링크를 제공한 사안임. 총 4개 게시물임.

순번 1번~4번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국내 방송물로 연결되는 수개

의 직접링크를 제공 중임. 게시자는 권리자에 의하여 불법복제물의 전송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다수의 해외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의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음. 해당 방송물들은 ★★★★★, □□□□□ 등 OTT 서비스를 통하여 합법 시장에서 이용 가능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불법복제물을 직접 전송 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심의대상 게시물의 직접링크를 ‘저작권 침해 정보’로 보아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문제 됨.
- 강나래 전문위원: 저작권법 및 판례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음. 이에 우리 심의위원회는 게시자에게 불법행위 방조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에 준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링크 행위자가 정법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를 인정할 바 있음.

또한, 이에 앞서 하급심 판결에서는 해외 사이트에 게시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저작물에 대한 실질적 접근 가능성을 증대시켜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음.

이에 우리 심의위원회는 게시자에게 불법행위 방조의 민·형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오로지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로 다수의 불법복제물이 해당 게시물을 통하여 공중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출되고 있음. 따라서 심의대상 게시물의 링크행위를 저작권 침해 방조행위로 보아 심의대상 게시물의 시정권고 대상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보임.
- D 위원: 우리 심의위원회는 원천게시물이 국내 서버에 저장된 경우에는 원천게시물에 대하여, 해외 서버에 저장된 경우에는 링크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하고 있음. 본 사안의 경우 원천게시물이 해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바, 링크를 제공 중인 심의대상 게시물을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A 위원: 앞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모두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임. 가결 의견임.
- B, C,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4번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번~7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도구를 통해 신고한 건임.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불법복제물을 각 제공 중인 사안임. 총 8개 게시물임.

(순번 5번 채증 자료 및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채증 자료에는 현존했던 게시물이 심의일 현재 삭제된 것으로 확인됨.

(순번 6번 채증 자료 및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순번 7번과 동일한 블로그에서 전송 중인 게시물로, 현재 해당 블로그는 폐쇄된 것으로 확인됨.

♣♣♣ 고객센터의 안내에 따르면, 블로그 자체만을 삭제하는 기능은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삭제를 원하는 경우 이용자가 계정을 탈퇴하여야만 함. 더불어 이때 삭제된 블로그 데이터는 서버에서 파기되므로 복구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E 위원: 종합하면 순번 5번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나, 심의일 현재 삭제되어 삭제·전송 중단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로 족할 것으로 생각됨.

- D 위원: 동의함. 다만, 기존 우리 심의위원회는 이용자가 계정을 탈퇴하여 불법복제물이 서버에서 파기된 경우 저작권 침해 상태가 해소되었다는 점과 존재하지 않는 계정에 대한 시정권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일관되게 부결해왔음. 순번 6번~7번 역시 동일한 사안으로 생각됨. 해당 순번에 대하여는 부결 의견임.
- A, B, C,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5번은 심의일 현재 삭제되어 삭제·전송 중단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순번 6번~7번은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의 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8번~12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임. ▣ ▣, ▼▼▼에서 ‘○○ ○○○’ 또는 ‘▷▷▷▷▷’, ‘♣ ♣♣♣’라는 중국산 불법 스트리밍 기기(이하 ‘본건 기기’라고 함)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6개 게시물임.
(순번 8번~12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태블릿 PC 형태의 불법 복제물 기기를 판매 및 해당 기기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음.
이 중 순번 12번 심의대상 게시물은 심의일 현재 삭제된 것을 확인하였음.
본건 기기에 전용 앱(app)을 설치하면 실시간 TV 방송 서비스 및 VOD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영화, 방송 등의 영상저작물을 무단

이용할 수 있음.

본건 기기는 여러 개의 조각으로 분할되어 송신 중인 저작물을 수신하여 재생함. 이 과정에서 본건 기기에 저작물 파일이 일시적으로 저장됨. 이는 권리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나마 저작물을 본건 기기에 고정하는 것에 해당하여 복제권 또한 침해함. 더불어 실시간 방송 서비스의 경우 방송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송신 중인 영상저작물을 무단으로 재송신하고 있는 것으로서, 동시중계방송권 역시 침해한다고 평가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게시자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 본건 기기를 판매하여 본건 기기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도운 것으로 보이므로, 게시자의 본건 기기 판매행위는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D 위원: 해당 사안 역시 불법복제물의 직접 복제·전송 사실은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생각됨.
- 강나래 전문위원: 본건 기기 판매행위는 권리자의 복제권, 전송권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 행위임이 인정됨. 심의대상 게시물은 본건 기기 판매행위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C 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함. 더불어 해당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시정권고의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임. 다만 순번 12번은 심의일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이 삭제되어, 삭제·전송중단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 조치만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A, B,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8번~11번은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하고, 순번 12번은 현재 삭제되어 삭제·전송 중단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3번~20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임. ●●●●에서 각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총 9개 게시물임.
 (순번 13번~14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무료로 웹툰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한다는 취지로 각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소개하면서, 해당 사이트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 중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는 대부분 우리 심의위원회가 제2022-9회, 11회, 13회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에 의하여 구글에 검색결과 제한을 요청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로 확인되었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직접링크 부분은 다수의 불법복제물을 지속적으로 유통하는 '■■■■■■■■', '☆☆☆☆' 등에 접속 가능한 직접링크 또는 주소 알림 페이지에 대한 공중의 접근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음. 알림 페이지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를 회피할 수 있는 대체사이트의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저작권 침해 정보성을 유지한다고 할 것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통하여 연결되는 웹사이트는 설치형 블로그이거나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 시정권고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원천게시물이 해외 서버에 존재할 경우 링크게시물에 시정권고한다는 우리 심의위원회의 일관된 입장과, 실질적인 시정권고 이행을 통해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근거 하에 링크게시물인 심의대상 게시물에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 B 위원: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 등'에 해당함. 더불어 각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 중인 정보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 합법 시장 및 저작물의 가치에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각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 A, C,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3번~20번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21번~1568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2,518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만화, SW,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영화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13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2022. 4. 13. 개봉한 최신 영화를 18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영화 전체 분량인 약 133분을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 중임.
(출판 '검사가 법을 모름'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303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웹소설을 6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소설 1권부터 10권까지 텍스트(.txt)파일 형태의 다운로드 형식으로 제공 중임. 해당 저작물은 네이버 시리즈 웹툰 플랫폼에서 유료 결제 후 이용 가능함.
(SW '오토캐드 AutoCAD 202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500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22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해당 저작물은 2021. 04. 09. 발매한 2D, 3D CAD 소프트웨어로 권리자 홈페이지에서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1년 사용금액은 2,354,715원임.

(방송 '과친코(202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566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방송 '과친코(2022)' 7화를 16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해당 저작물은 2022. 03. 25.부터 방영한 드라마이며, 애플tv+에서 유료 서비스 제공 중임.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E 위원: 순번 21번~1568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B,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2번~1568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26145호~26148호(순번 1번~4번)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2-26149호(순번 5번)는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2-26149호~26150호(순번 6번~7번)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2-26152호~26155호(순번 8번~11번)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2-26156호(순번 12

번)는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2-26157호~26164호(순번 13번~20번)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2-26165호~27712호(순번 21번~1568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6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6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5. 4.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강태욱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

위원 박성호